

# 2017년도 기록관 견학 및 정책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 2018.1.24.)

## □ 개요

- (목적) 「기록관 견학 및 정책세미나(2017.12.21.)<sup>1)</sup>」와 관련하여 기록관 및 기록관리 업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 (대상) 중앙부처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록연구사
- (내용) 기록관 현황 분석, 기록관 체제 개선, 기록관리 업무 개선방안 설문

## □ 설문조사 분석결과

- 총 55명의 기록연구사가 설문조사에 응답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22명	33명

- 응답자 수가 저조하나,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정도의 데이터 도출  
※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할 순 없으나, 대체로 중앙부처/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
- 대다수의 기록연구사가 기록물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며, 이로 인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답변

기록물관리 업무 전담	기록물관리 업무 외 담당
8명	47명

기록물관리 업무 가능	기록물관리 업무 불가능
6명	41명

- 기록물관리 업무 이외에, 정보공개, 보안, 개인정보, 민원, 상훈, 정보화, 국유재산, 물품관리, 교육, 서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기록물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 발생(기록물관리 업무 제외하고 평균 23가지 업무 담당)

1) 세종청사 기록관 담당자 협의회 주최(국가보훈처 주관)

○ 전반적으로 현재 기록관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

현행 체제 유지 찬성	현행 체제 유지 반대
2명	53명

- 현행 기록관 체제의 문제는 기록연구사 1명이 기관 전체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인 기록관'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력 증원, 기록물관리 업무 개선, 기록연구직 승진, 인사교류 등의 방법 제시

※ 중앙부처는 '인력 증원(26%)=연구직 승진(26%)>업무개선(23%)' 순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인력 증원(36%)>업무개선(25%)>인사교류(16%)>연구직 승진(13%)' 응답

○ 기록관 체제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앙부처는 모두 긍정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부정적 의견 제시

기록관 체제 개선 방안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단기(지속적 및 대규모 인사교류)	73%	27%	81%	19%
중기(국가기록원 소속 전환 및 파견)	77%	23%	47%	53%
장기(기록관 폐지/레코드센터 설치)	73%	27%	47%	53%

- 중기-장기 방안 반대 의견의 경우 연고지역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 파견 시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장악력 저하, 통합 기록관 체제 시 오히려 기존 기록연구사 T.O도 빼앗길 위험 등 의견이 제시됨

○ 기록관리 업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모두 긍정적 의견 제시

기록관리 업무 개선 방안	찬성	반대
생산현황통보→기록물 보유/평가폐기 현황 통보 변환	83%	17%
국가기록원에서 전자기록 이관 및 포맷변환 업무 담당	96%	4%
국가기록원에서 기록 재분류 업무 담당	85%	15%
기록관리기관평가 폐지→기록관리 연간업무보고서 제출	83%	17%
보존기간 단순화(5년/10년-영구)	85%	15%
비밀기록 관리방안 재검토	94%	6%

**참고자료 1****기록관 및 기록관리 설문조사 결과****I. 기본 정보**

1. 당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자
중앙행정기관	22명
특별지방행정기관	33명

2.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얼마입니까? ※ 해당 기관에서만 근무한 경력

구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중앙	1명	1명		4명	16명
특행	9명	17명	7명		

3. 당신의 기록관리 근무 경력은 얼마입니까?

구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중앙		1명		5명	16명
특행	8명	13명	5명	6명	1명

**II. 기록관리 현황**

4-1. 당신은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①을 체크한 경우 5-1~5-3, ②를 체크한 경우 4-2~4-4 답변

구분	그렇다	아니다
중앙행정기관	5명	17명
특별지방행정기관	3명	30명

4-2. 그 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담당하는 업무를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구분	정보 공개	보안	개인 정보	정보화	물품 관리	국유 재산	당직	기타 <sup>2)</sup>
중앙	14명	1명	1명		1명			9명
특행	24명	9명	12명	4명	1명	1명	1명	18명

4-3. 다양한 업무를 맡은 경우, 현재 기록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	1명	16명
특별지방행정기관	5명	25명

2) 재산신고, 민원, 상훈, 서무, 사회봉사, 문서배부, 우편수발, 관인관리,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음

4-4. 향후 5년 내에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중앙행정기관	3명	14명
특별지방행정기관	1명	28명

5-1. 현재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그렇다	아니다
중앙행정기관	0명	5명
특별지방행정기관	0명	3명

5-2.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전부 체크해주시요.

	중앙	특행
기록관리에 관심 없는 조직 분위기	5명	2명
기록관리 업무량이 많아서	2명	1명
기록관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3명	1명
예산, 인프라, 시설이 열악해서	5명	3명
생산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미비	2명	0명
기타	0명	1명

5-3. 향후 5년 내에 현재 기록관리 현황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중앙행정기관	2명	3명
특별지방행정기관	3명	0명

### Ⅲ. 기록관리 발전방향

6-1. 현재 기록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중앙행정기관	1명	21명
특별지방행정기관	1명	32명

6-2. 찬성/반대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의견
찬성	특별행정기관의 기록관 유지에 대한 찬성일 뿐 소속 등의 변경과는 무관함. 특별행정기관 중에서 산하기관이 많은 기록관은 본부 통합 운영의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정원감축의 빌미를 제공함.
반대	1인 기록관 체제의 한계, 운영지원과 소속의 한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 등

6-3. 현 기록관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데, 아래 개선방안<sup>3)</sup>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2가지 선택)

	중앙	특행
기록관리 전담직원 배치 혹은 증원	11명	22명
시스템 개편	5명	5명
생산현황통보 폐지 등 기록관 기록관리 업무 개선	10명	15명
기록연구직 승진	11명	8명
인사교류를 통해 현장경험 있는 직원을 국가기록원 정책/실무 부서에 배치	4명	10명
기타	2명	1명

### 가. 기록관 체제 개선에 관한 방안(단기-중기-장기 방안)

7-1.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행정/연구/사서 등 모두 포함)의 20% 이상 인사교류」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만약 실시하면 인사교류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단기 방안)

구분	있다	없다
중앙행정기관	16명	6명
특별지방행정기관	26명	6명

- 효과 : 인사교류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집행할 수 있으며, 현장 담당자의 경우는 장기간 루틴한 기록관리 실무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음
- 방안 : 인사교류와 관련한 의견조회 및 제도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분위기 조성,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감안하여 5%→10%→20% 등 연도별로 교류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며, 인사교류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설정
- 조건 : 인사교류와 관련한 불이익(현재 거주지와 전혀 다른 지방으로 인사교류,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인 인사교류 대상자로 통보 등)을 최소화하며,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교류수당, 성과평가 등급 상향 부여 등) 보장해야 함. 국가기록원 승진 기준에 현장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인사교류 참여 유도

7-2.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직 기록연구사를 국가기록원 소속직원으로 통합하고, 현재 소속기관에 파견 형태로 근무」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만약 실시하면 파견 형태로 근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중기 방안)

구분	있다	없다
중앙행정기관	17명	5명
특별지방행정기관	15명	17명

3) 국가기록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에서 현실적으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만 명시

- 효과 :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으며, 생산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적/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방안 : 소수직렬정원 통합에 대한 의견조회 및 제도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분위기 조성. 파견 전환 시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배정함을 우선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타기관 파견. 파견직에 대한 승진 우대로 국가기록원 직원의 파견 참여 유도. 파견기간은 시행 초기에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무기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나, 최소 2년 이상은 국가기록원 본원 근무하도록 규정. 한시위원회 등으로 파견된 직원은 위원회 종료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업무량이 많은 기관은 '연구관 1명 + 연구사 다수' 등의 팀 형태 혹은 과 형태로 파견해야 함.
- 조건 : 현재 국가기록원 인사 경향으로는 파견자에 대한 인사(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한 후에 추진해야 함. 예를 들어 파견자 및 국가기록원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별도로 진행한다는지, 파견자에 대한 우대 인사를 실시한다는지 등의 장점이 있어야 직렬통합이 가능하며 파견 근무가 활성화될 것임

7-3.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기관 소속 기록관을 없애고, 처리과-국가기록원(레코드센터-아카이브즈) 형태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장기 방안)

구분	있다	없다
중앙행정기관	16명	6명
특별지방행정기관	14명	16명

- 효과 :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생산기관의 의무가 중요시되며, 현행 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소속의 레코드센터 형식으로 변환되어 영구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
- 방안 : 소수직렬정원 통합 후 단계적으로는 기록관 시설을 임시 레코드센터로 전환. 중장기적(향후 5년 이내)으로 국가기록원은 광역 레코드센터를 건립하여 생산기관의 기록물이 레코드센터로 이관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현재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은 레코드센터로, 서울기록관은 국가기록원 분원으로 분리 혹은 레코드센터로 지정. 레코드센터는 보존 위주의 소규모 기관으로 다수 건립하며, 예를 들어, 광화문청사 인근, 세종청사 인근은 중앙부처 기록물 이관, 소속기관의 경우는 정부지방합동청사 인근 혹은 내부에 레코드센터를 설치하여 기록 이관 및 보존)
- 조건 : 국가기록관리체제 정책기능은 별도의 기구(가칭 국가기록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집행기능은 역사기록원(archives)과 기록정보원(records management)으로 이원화 조직 구성. 기본적으로 각각의 원은 별도의 조직/시설/예산을 가지며, 이에 대한 관리는 국가기록위원회가 담당.

## 나. 기록관 업무 개선에 관한 방안

8-1.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보유 및 평가폐기 현황 확인 제도」로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생산현황통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좋다	나쁘다
중앙행정기관	17명	5명
특별지방행정기관	28명	4명

- 효과 : 기관 기록물 보유현황 및 평가폐기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할 경우 보다 명확히 해당 기관에서 영구기록물을 포착 및 이관을 실시할 수 있음
- 방안 : 현재 2년마다 1번씩 진행되는 정수점검 업무 시, 결과보고를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여 보유 현황 파악(향후 1년에 1번씩 혹은 정수점검 업무 유무와 관련없이 매년 보유현황 통보 추진). 평가폐기 현황의 경우 평가심의회 결과를 국가기록원으로 통보, 통보 후 일정기간 후(예를 들어 1주일 혹은 10일) 파쇄 진행(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폐기 대상 기록물 검토하여, 필요 시 이관 조치). 대국민에게 평가폐기 결과 공표 및 의견조회 청취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8-2.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전자기록 조기이관 및 (문서/장기보존)포맷변환 제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관 업무」로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좋다	나쁘다
중앙행정기관	20명	2명
특별지방행정기관	31명	0명

- 효과 : 전자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조기이관 및 이관 즉시 포맷변환 작업을 통하여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향후 전자기록의 물리적 이관 방식 폐지 및 영구기록의 국가기록원으로의 다이렉트 이관 추진)
- 방안 : 현행 처리과-기록관-국가기록원 이관의 경우 시간차(1·2년, 10년 이후)가 존재하여 국가기록원 이관 시 전자기록의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처리과 단계로 되돌려 해결불가하므로 영구보존기록의 경우는 처리과에서 1·2년 후 기록관·국가기록원으로 동시에 이관(혹은 국가기록원으로만 이관)한 후 포맷변환이 필요할 시 국가기록원에서 진행

8-3.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 재분류」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좋다	나쁘다
중앙행정기관	19명	3명
특별지방행정기관	26명	5명

- 효과 : 건 단위 기록물 공개재분류는 단기간의 시간 경과로 ‘비공개→공개’로 전환되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임. 대부분의 장기간의 시간 경과를 통해 ‘공개’로 재분류되며 따라서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재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임
- 방안 : 생산단계에서의 철저한 공개여부 설정 및 이를 검증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가령 결재 즉시 원문공개되는 시스템을 정보공개 영역과 협업하여 마련해야 함. 기록관 혹은 국가기록원 이관 시 자동으로 ‘비공개→공개’로 전환되는 시스템 설정도 구현해야 함. 재분류는 장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기록에 대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 보존하다가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함.

8-4.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폐지하고 기록관리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업무 지원 및 인력 파견 제도」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좋다	나쁘다
중앙행정기관	17명	4명
특별지방행정기관	28명	5명

- 효과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은 대부분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기관평가로 인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실적 위주 평가로 인한 의미없는 문서작업 등). 따라서 기관 기록관리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국가기록원으로 소수직렬 통합되기 전까지 지원 및 파견제도는 유효함)
- 방안 : 기록관리 평가를 위한 실적 위주의 자료 제출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1년의 업무흐름 및 이에 따른 업무실적/국가기록원 지원사항 등을 명시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해당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서는 검토하여,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컨설팅, 인식교육, 인력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을 마련하여 협업을 통한 기록관리를 추진

8-5.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보존기간 단기(5년/10년), 영구 제도」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좋다	나쁘다
중앙행정기관	20명	2명
특별지방행정기관	26명	6명

- 효과 : 현행 7종의 보존기간 책정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처리과에서도 보존기간을 일부만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기간을 단순화하여 업무참고가 필요하면 5년/10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는 영구로 나뉘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음(5년/10년은 종이기록물 보존공간 확보 문제로 구분하였으며, 향후 보존공간 문제가 해결되면 10년으로 단일화할 필요성 있음)
- 방안 :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단순화를 먼저 추진(10년, 영구 2종)하며, 종이기록물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5년, 10년, 영구로 구분하여 추진함. 영구기록물의 경우 현재 생산후 10년이 지나 이관하는 것에서 5년 이내 이관으로 바뀌어서 생산기관의 보존공간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함. 또한 이 제도는 7-3에서 언급한 광역 레코드센터가 마련되면 생산기관에서는 단기보존 기록, 레코드센터에서는 영구보존 기록을 각각 나눠서 보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폐기도 생산기관에서는 국가기록원 즉 전문요원 검토 후 단기보존 기록의 폐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기록물 평가폐기 현황 보고 제도와 연계되어야 함)

8-6.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비밀기록 관리방안 재검토」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좋다	나쁘다
중앙행정기관	19명	1명
특별지방행정기관	28명	2명

- 효과 : 현재 일부 특수기록관 및 군기관을 빼고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비밀기록은 충무계획 혹은 을지훈련 관련이 대다수이며, 이는 대부분 단기보존 대상이나 공공기록관리법의 비밀기록 이관조항으로 인하여 일반문서 재분류되지 않고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에 어려움 발생. 또한 생산현황통보에서 비밀기록 현황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정원에서 매년 2차례 비밀기록현황 조사 데이터가 명확함.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비밀기록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안 : 국방/외교/통일/군 등과 관련한 일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기록은 영구기록으로 간주하여 현행과 같이 관리(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일반문서든 비밀문서든 상관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며, 그 외의 기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은 처리과에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만료까지 보관하다가 기록물 평가심의회 때 반영하여 폐기 처리(기록관 이관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크기 때문에 생산부서 보관 후 보존기간 만료 시 처리 유도. 처리과에 비밀기록 보존공간 및 시설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존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음).

#### 8-7.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 기록관리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효과 : 현재 기록관리 지도점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기록물의 미등록, 유실, 무단폐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이와 관련하여 전문요원이 부서 기록관리 현황 감사를 담당할 수 있다면 생산단계의 기록관리를 좀더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방안 : 현행 공공기록관리법에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타법 혹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고려). 전문요원이 감사실 소속이 되어 기록관리 감사를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이는 현행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 설치 및 전문요원 배치/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협조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

**참고자료 2**

**기록관 체제 및 업무개선 관련 설문대상자 추가의견**

**가. 기록관 체제 개선에 관한 방안(단기-중기-장기 방안)**

7-1.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직원(행정/연구/사서 등 모두 포함)의 20% 이상 인사교류」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만약 실시하면 인사교류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단기 방안)

- 효과 : 인사교류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집행할 수 있으며, 현장 담당자의 경우는 장기간 루틴한 기록관리 실무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음
- 방안 : 인사교류와 관련한 의견조회 및 제도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분위기 조성,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을 감안하여 5%→10%→20% 등 연도별로 교류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며, 인사교류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설정
- 조건 : 인사교류와 관련한 불이익(현재 거주지와 전혀 다른 지방으로 인사교류,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인 인사교류 대상자로 통보 등)을 최소화하며,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교류수당, 성과평가 등급 상향 부여 등) 보장해야 함. 국가기록원 승진 기준에 현장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인사교류 참여 유도

인사교류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음. 기록관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정책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력 보유자의 기록원 인사교류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음. 단순한 경험쌓기용 인사교류 시 자칫 별 효과 없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관(국가기록원) 인사교류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근무경력 하한선을 5년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장교도 사관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배치 받을 때에는 야전부대 소대장부터 거칩니다. 기록관리계의 '야전부대 소대장' 경력을 일정기간 이상 숙성시킨 사람을 인사교류토록 해야 합니다.

현장 기록연구사보다는 국가기록원 소속의 직원 또는 기록연구사로 하여금 현실의 기록물관리 현실을 직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인사교류는 과거 시도된 바가 있었으나 인사교류 시도자가 별로 없어 실패한 사례로 알고 있다. 현 1인 기록관 체제하에서는 국가기록원과의 인사교류가 별 실익이 없어보이며, 반드시 실무경험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국가기록원에서 정책수립에서 잘 적용되느냐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인사교류 방법보다는 전입시험의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사교류시 기록원의 교류 직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정책·기획부서와 평가 등에 대한 부서가 포함되어야 실효성 있는 인사교류가 될 수 있을 것임

소속을 유지한 채 기획인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 기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짐. 기관에서 인사교류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제대로 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 궁극적으로는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여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이런 소수직렬들이 정책기관(국가기록원)과 인사교류를 추진할 경우 기관(인사팀)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차원에서 독려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는 정책적으로 행정직과 동일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함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확산에 중점을 두어야 함

기관의 연구사들이 이동, 변경 사항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현실에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로, 타기관 혹은 국가기록원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업무 혹은 환경을 접하고 해당 기관에 접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p>일선 기록관에 국기원직원이 배치될 경우,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업무공백이 발생될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기록물 평가는 기관에서 2~3년 정도 근무해야지 처리가 가능한 업무임</p> <p>현재의 문제는 국기원 연구사들이 현장 업무를 모른단 것이지, 현장연구사들이 국기원업무를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인사교류가 아닌 국가기록원 연구사의 경우 일선기록관에 파견되어 실무를 1년 정도 익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할 것임</p> <p>기관 연구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기록원부서 배치.</p> <p>파견의 경우 1~2년에 불과. 파견 직원으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파견을 (타 업무) 받는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자라 하더라도 중요업무를 맡길 수 없음.</p>
--

7-2.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직 기록연구사를 국가기록원 소속직원으로 통합하고, 현재 소속기관에 파견 형태로 근무」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만약 실시하면 파견 형태로 근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중기 방안)

<p>○ 효과 :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으며, 생산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적/전문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p> <p>○ 방안 : 소수직렬정원 통합에 대한 의견조회 및 제도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분위기 조성. 파견 전환 시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배정함을 우선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타기관 파견. 파견직에 대한 승진 우대로 국가기록원 직원의 파견 참여 유도. 파견기간은 시행 초기에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무기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나, 최소 2년 이상은 국가기록원 본원 근무하도록 규정. 한시위원회 등으로 파견된 직원은 위원회 종료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업무량이 많은 기관은 ‘연구관 1명 + 연구사 다수’ 등의 팀 형태 혹은 과 형태로 파견해야 함.</p> <p>○ 조건 : 현재 국가기록원 인사 경향으로는 파견자에 대한 인사(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한 후에 추진해야 함. 예를 들어 파견자 및 국가기록원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별도로 진행한다든지, 파견자에 대한 우대 인사를 실시한다든지 등의 장점이 있어야 직렬통합이 가능하며 파견 근무가 활성화될 것임</p>
--

<p>파견되는 기록연구자들은 기관의 어디로 파견되는지? 운영지원과? 정보화기획팀? 창조행정담당관실? 고용관리과? 수도권-지방, 연고지-비연고지, 선호기관-비선호기관 등의 요소에 따라 수요가 쏠릴 수 있음. 2. 기관 적응(법령, 업무, 사람 등등)에 오랜 시간이 필요 3. 기관의 업무 및 기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록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짐 4. 결국 직업안정서,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연속성 문제 발생 소지가 큼 5. 기관으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고, 핵심기록에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 등</p> <p>현재 각 기관 소속 기록연구사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소속 직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록관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파견직원이라는 인식은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함. 기간이 다하면 근무가 종료되는 파견직의 업무가 해당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p> <p>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기관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아키비스트로서의 기관의 장기근속했을 때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p> <p>국가기록원 소속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 내의 직원들과 소통이나 교감력 등이 떨어져 업무상 경로가 잘 안될 가능성이 높고, 기록물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p> <p>과거 시도한 바 있었으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추진되어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시행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직규모에 따른 인원파견 규모가 달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 본다. 정원통합운영은 국가기록원 단일창구에서 기록연구사 등 증원추진이 가능하므로 오히려</p>
--

<p>려 더 설득력있는 논리개발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p> <p>과거 시도한 바 있었으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추진되어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시행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직규모에 따른 인원파견 규모가 달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 본다. 정유통합운영은 국가기록원 단일창구에서 기록연구사 등 증원추진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더 설득력있는 논리개발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p> <p>「국가직 통합 및 파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가 아닌 7-3의 형태가 되어야 효율성이 있을 듯함. 현재의 체계에서는 기대효과에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음</p> <p>기관 파견직은 국가기록원에 일정기간동안 근무경험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해당지역의 광역레코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향후 광역 레코드센터가 아카이브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해당기관의 풍부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정정도의 직제를 갖춘 상태에서 승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현장에서 일정기간 먼저 근무토록 하고 국가기록원 근무는 일정정도 현장경험이 있어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p>현재 기관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구성원들의 호응과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관 소속이 아닌 파견형식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p> <p>파견형태의 경우, 기관에 대한 소속 감동이 약화될 수 있음</p> <p>국가기록원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다른 추가 업무를 하지 않고 기록업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소속되어도 소속감이 없고 성과나 승진 등 챙겨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파견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p> <p>기관에 파견 근무시 기록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찬성 (기관에서 정보공개, 보안 등 타 업무 강요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경우 찬성)</p> <p>통합하면 인원 증원이 되나? 파견직 공무원이 파견된 기관에서 힘을 쓸 수 있는가?</p> <p>국가기록원 통합보다 중앙부처 내 팀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p> <p>국가직(중앙부처)은 자체적으로 승진 등 인사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 결과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나 '조건'부분을 잘 해결해야함.</p> <p>파견직원에게 해당 기관의 기록을 총괄할 권한을 주지 않음. 국가기록원 이관이 아닌 기관자체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봄.</p>
---

7-3.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기관 소속 기록관을 없애고, 처리과-국가기록원(레코드센터-아카이브즈) 형태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장기 방안)

<p>○ 효과 :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생산기관의 의무가 중요시되며, 현행 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소속의 레코드센터 형식으로 변환되어 영구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p> <p>○ 방안 : 소수직렬정원 통합 후 단기적으로는 기록관 시설을 임시 레코드센터로 전환. 중장기적(향후 5년 이내)으로 국가기록원은 광역 레코드센터를 건립하여 생산기관의 기록물이 레코드센터로 이관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현재 대전기록관, 부산기록관은 레코드센터로, 서울기록관은 국가기록원 분원으로 분리 혹은 레코드센터로 지정. 레코드센터는 보존 위주의 소규모 기관으로 다수 건립하며, 예를 들어, 광화문청사 인근, 세종청사 인근은 중앙부처 기록물 이관, 소속기관의 경우는 정부지방합동청사 인근 혹은 내부에 레코드센터를 설치하여 기록 이관 및 보존)</p> <p>○ 조건 : 국가기록관리체제 정책기능은 별도의 기구(가칭 국가기록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집행기능은 역사기록원(archives)과 기록정보원(records management)으로 이원화 조직 구성. 기본적으로 각각의 원은 별도의 조직/시설/예산을 가지며, 이에 대한 관리는 국가기록위원회가 담당.</p>
---

(광역) 레코드센터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음 2. 소속기관의 레코드센터는 비전자기록물 수용이 어려울 것 같음(거리, 분량 등) 3. 기존 기록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어떻게 레코드센터로 재배치(재설



이 경우 생산시스템 또는 생산단계의 행정환경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정책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레코드 센터가 생산기관이 아닌 통합 레코드센터에 위치하는 문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되어야하지 않을까?
중앙부처 - 소속기관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더 좋다고 생각함.
위의 중앙부처는 국가기록원이 아닌 중앙부처 자체 영구기록관을 만들어서 운영.
기록원의 위상 강화 필요.

## 나. 기록관 업무 개선에 관한 방안

### 8-1.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보유 및 평가폐기 현황 확인 제도」로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생산현황통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효과 : 기관 기록물 보유현황 및 평가폐기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할 경우 보다 명확히 해당 기관에서 영구기록물을 포착 및 이관을 실시할 수 있음
○ 방안 : 현재 2년마다 1번씩 진행하는 정수점검 업무 시, 결과보고를 국가기록원으로 통보하여 보유 현황 파악(향후 1년에 1번씩 혹은 정수점검 업무 유무와 관련없이 매년 보유현황 통보 추진). 평가폐기 현황의 경우 평가심의회 결과를 국가기록원으로 통보, 통보 후 일정기간 후(예를 들어 1주일 혹은 10일) 파쇄 진행(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폐기 대상 기록물 검토하여, 필요 시 이관 조치). 대국민에게 평가폐기 결과 공표 및 의견조회 청취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생산현황통보서식과 보유현황통보서식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김
기관에 기록연구직 인력의 배치현황이 우선 파악되어야 합니다. 기록물관리 업무에 대해 인계자도 없거니와 각종 잡무를 다 떠넘기는 상황에서 배치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기관의 기록물 보유현황을 파악하라는 것은 무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폐기는 필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연마다 현황을 통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 제 2의 기록관리 기관평가나 다름없게 됩니다.
생산현황통보 등은 SORA를 쓰지 않고, 업무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RMS를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함.
보유현황 통보는 생산현황 통보와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고 평가폐기 현황은 기관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까지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생산현황통보제도 폐지의 핵심은 전자기록관리체제에서는 별도의 통보없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전자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될 듯함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하자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일 수 있으나 국가기록원에서 정부조직을 분석하여 영구보존할 기록물을 수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함.
보유 및 평가폐기 현황 관리는 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기록원의 개입이 기관이 기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음.
‘보유현황’ 모호함. 처리과에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지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지...
보유현황은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간행물 등을 파악하는 것인지...그러면 기존 생산현황통보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산현황도 확인 제대로 못하는 국가기록원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가...
단위과제/보존기간에 따라 처리하는 기록관 거시적 평가를 하는 국가기록원 철목록보고 고를 것인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벗어난 평가를 하는 국가기록원이라면 이런 보고가 필요할까!
현 제도도 문제 없음. 생산현황통보 충실히 실행.

8-2.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전자기록 조기이관 및 (문서/장기보존)포맷변환 제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관 업무」로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p>○ 효과 : 전자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조기이관 및 이관 즉시 포맷변환 작업을 통하여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기록관에서의 포맷변환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향후 전자기록의 물리적 이관 방식 폐지 및 영구기록의 국가기록원으로의 다이렉트 이관 추진)</p> <p>○ 방안 : 현행 처리과-기록관-국가기록원 이관의 경우 시간차(1·2년, 10년 이후)가 존재하여 국가기록원 이관 시 전자기록의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처리과 단계로 되돌려 해결불가하므로 영구보존기록의 경우는 처리과에서 1·2년 후 기록관·국가기록원으로 동시에 이관(혹은 국가기록원으로만 이관)한 후 포맷변환이 필요할 시 국가기록원에서 진행</p>
---

<p>잘 모르는 업무라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자 환경에서 처리과-RM-AM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기록을 10년씩 RM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는 듯 2. 다만 전자기록의 이관에 국한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전자기록 관리프로세스 전반의 재설계 과정에 이관 부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p> <p>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이 2.0버전으로 바뀌면 그에 따라 보존포맷의 변환시점과 횟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록관에서 포맷변환을 하도록 하려면 기록관리시스템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관업무로 넘겨야 합니다. 매년 RMS 헬프데스크에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p> <p>전자기록의 컨티뉴엄을 고려하면 기록관리시스템을 거치는 이관보다는 온나라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 탑재가 바람직하며, 온나라에서 바로 CAMS로 이관조치를 하는 것이 이관오류 및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봄.</p> <p>첨언하자면 전산적인 기술력도 아니므로 기관 동의 문서로 국가기록원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를 추진함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p> <p>어차피 국가기록원에 수집할 기록물이 영구로 한정지어진다면 보존포맷 업무는 국가기록원이 담당해야 할 것임. 특히 현재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상 문서보존포맷일 경우 스토리지만 잡아먹고 실효성 업무 업무임.</p> <p>기관에서 기록원으로 전자기록 이관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관 기간에 대해서는 몇 년이 적당한지 논의가 필요함</p> <p>(100% 전자기록인 경우 2년 후 이관 괜찮음. 전자+비전자 혼용인 경우는? 종이문서도 2년 후 이관?)</p> <p>그래도 국가기록관 부담은 어찌하냐!</p> <p>좋은 방안인 것 같으나 처리과 국가기록원으로 바로 이전하게 되면 기록관의 역할은 의미가 없어진다.</p> <p>실제로 오류도 포맷변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방안이 옳다고 생각.</p> <p>조기이관은 비전자 제외 필요.</p> <p>현행업무 문제 없음.</p> <p>조기이관시 RMS 이관 생략 고려.</p>
---

8-3.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 재분류」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p>○ 효과 : 건 단위 기록물 공개재분류는 단기간의 시간 경과로 ‘비공개→공개’로 전환되는 대상은 지극히 한정적임. 대부분의 장기간의 시간 경과를 통해 ‘공개’로 재분류되며 따라서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재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임</p> <p>○ 방안 : 생산단계에서의 철저한 공개여부 설정 및 이를 검증하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가령 결재 즉시 원문공개되는 시스템을 정보공개 영역과 협업하여 마련해야 함. 기록관 혹은 국가기록원 이관 시 자동으로 ‘비공개→공개’로 전환되는 시스템 설정도 구현해야 함. 재분류는 장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기록에 대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 보존하다가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함.</p>
--

<p>생산단계에서 철저한 공개여부 설정 및 이에 대한 검증 체계 구성 대찬성(원문공개 시스템 협업) 기록관 혹은 국가기록원 이관 시 자동으로 공개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의도를 잘 모르겠음</p>
<p>어느 정도까지는 기록관이 공개재분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대상의 선정에 있어 접수기록물은 제외한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p>현재의 5년 단위 공개재분류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전락한 상태다. 상당수의 경우 개인정보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결국 5년 주기 재분류가 의미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온 나라에서 비공개 5호 사유 책정 시에는 반드시 공개시점을 설정해야 기안이 가능토록 설정하여, 자동공개가 가능토록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p>
<p>첨언하자면 이 또한 정말 소모적인 업무로 차세대 기록관리 기능개선에 포함되어야 함</p>
<p>질의에 적극 찬성하며 1년에 건별 재분류를 제대로 하려면 1년 내내 재분류만 해야 할 상황임. 그래도 못함. 또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는데 5년 단위 재분류 및 이관기록물 재분류 실효성이 없다고 봄. 또한 행정기관 조직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공개재분류를 정확히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임.</p>
<p>공개재분류 업무는 현재 생산·접수 모두 대상인데 생산만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서를 A기관에서는 공개, B기관에서는 비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행안부 ‘정보공개’업무 차원에서 생산한 당해연도 내에 재분류토록 조치하고(정부업무평가 반영) 그 이후 기록원으로 이관하면 ‘재분류’ 단계 필요없음</p>
<p>*과거 정보공개평가에 동 지표가 있어 당해연도에 비공개문서에 대해 각 처리과에서 재분류 검토, 시스템에 재분류 결과입력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음(비공개→공개 20%이상)</p>
<p>기록관리 연간보고서 제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포상, 승진에 반영 등)</p>
<p>생산단계에서 ‘공개’, ‘비공개’도 못믿음. ‘영구기록물’만 이관하는 것은 전제한 것인가?</p>
<p>기록관 단위의 재분류는 실질적 의미가 없음.</p>
<p>예) 재분류하여 공개로 결정되었어도 정보공개청구시 해당부서에서 재검토하여 결정.</p>

8-4.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폐지하고 기록관리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업무 지원 및 인력 파견 제도」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 효과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은 대부분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기관평가로 인하여 기록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실적 위주 평가로 인한 의미없는 문서작업 등). 따라서 기관 기록관리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국가기록원으로 소수직렬 통합되기 전까지 지원 및 파견제도는 유효함)
- 방안 : 기록관리 평가를 위한 실적 위주의 자료 제출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1년의 업무흐름 및 이에 따른 업무실적/국가기록원 지원사항 등을 명시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해당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서는 검토하여,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컨설팅, 인식교육, 인력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을 마련하여 협업을 통한 기록관리를 추진

국가기록원에 인력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단시일 내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관리 기관평가가 생기는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업무평가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지원하고 지도하고 교육한 후에 평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인력이나 조직구성으로 가능하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평가에서 실시하는 우수기관 및 개인 포상을 업무보고서 제출 시 적용하는 방안 검토

현행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관에 따라서는 오히려 평가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기록관리에 관심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행 평가방식을 전면 재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필요함

연간업무보고서는 자칫 매년 똑같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특별히 변화가 있는 해가 아니라면요.) 지금 기관평가 받고 있는 항목들을 보고서 형식으로(서술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으로 방식만 바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기관평가 평균점수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면 (기준은 별도로 정하더라도..) 해당기관은 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미흡한 기관만 국가기록원에서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의 방법으로 개선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기록관리 유공 포상 목적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나 유공실적을 취합해서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하든, 우수사례를 공유하든, 그 결과물을 잘 활용하여 전체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면 어떨까합니다.

외부평가로 인해 기록물 관리업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음. 단순히 보고서 작성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업무가 될수 있음.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높지 않은 관계로 그 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기관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음.

현재 기관평가는 1인 기록연구사 업무를 평가받는 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음. 평가결과를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기관 내 기록관리체제를 향상 시키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정보화 업무, 민원 업무, 정보공개업무 등 기관 내 지원업무처럼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키는 걸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실제 기관평가가 있어서 기록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도 있음, 가령 기록물 평가업무나 지도점검의 경우, 평가항목에 없으면 수행하지 않을수도 있음, 적절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록관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제도가 없으니 기록연구사가 지도 및 점검해도 강제성이 없으니 관리가 안됩니다.

점수를 위한 평가이며, 기관,국가기록원 모두에게 전혀 이익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쓰기가 더 어려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모두 있음.

8-5.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보존기간 단기(5년/10년), 영구 제도」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p>○ 효과 : 현행 7종의 보존기간 책정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처리과에서도 보존기간을 일부만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존기간을 단순화하여 업무참고가 필요하면 5년/10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는 영구로 나뉘서 보존할 필요가 있음(5년/10년은 종이기록물 보존공간 확보 문제로 구분하였으며, 향후 보존공간 문제가 해결되면 10년으로 단일화할 필요성 있음)</p> <p>○ 방안 :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단순화를 먼저 추진(10년, 영구 2종)하며, 종이기록물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5년, 10년, 영구로 구분하여 추진함. 영구기록물의 경우 현재 생산후 10년이 지나 이관하는 것에서 5년 이내 이관으로 바뀌어서 생산기관의 보존공간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함. 또한 이 제도는 7-3에서 언급한 광역 레코드센터가 마련되면 생산기관에서는 단기보존 기록, 레코드센터에서는 영구보존 기록을 각각 나뉘서 보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폐기도 생산기관에서는 국가기록원 즉 전문요원 검토 후 단기보존 기록의 폐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기록물 평가폐기 현황 보고 제도와 연계되어야 함)</p>
--

현재 7종의 보존기간 적용이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음. 보존기간 책정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고, 제대로 책정되었지만 단위과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는 경우도 있음 2. 한시기록을 4종으로 구분한 것도 간격이 좁은 느낌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단순화 하는데 찬성임 3. 다만 개별 법률과의 검토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소속기관의 1년 3년의 기록물 분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1년과 3년의 기록물이 다량일 경우 5년 미만의 보존기간이 없어질 경우 보존공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일반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특정 법령에 따른 기록물은 그 고유의 기간을 인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보존기간 다양화를 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장기보존기록물 재평가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선 연구자들 사이에서 국가기록원 서고의 별명은 ‘블랙홀’입니다. 찾지 못할 또는 쓰지도 못할 기록물을 단지 일선 기관에서 ‘영구’로 매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존 하고 있는 건 굉장한 경제, 사회적 비용낭비입니다.

보존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30년 이상 기록물이라고 가치 평가로 위협인데 이를 단순화할 경우 자칫 쓸데없는 기록물의 보존량이 늘어날 수 있음.

비전자문서가 여전히 다수 생산되는 기관에서는 최소보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많으며, 업무에 따라서는 보존필요가 그 보다 단기에 소멸하는 기록도 있으므로 보존기간 단순화가 아닌 최소 단위(예: 1년)부터 영구까지 자유롭게 설정토록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함. 특히 5년/10년 단순화 문제는 기록물관리법의 개별법에 설정되어 있는 보존기간까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부적합.

보존기간 구분은 단순할 필요 있음  
우선 단기보존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구분하고, 단기보존에 대한 보존기간은 레코드센터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함. 단기보존 중에는 다른 법령상에서 보존기간이 명시된 기간을 준용하고,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중 반복적 행위로 진행되는 비중빙적인 기록들은 해당 기관에서 레코드센터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의미있지 않을까함.

단기보존 이외의 기록물은 레코드센터로 이관하여 1차 검토하여 보존기간을 확정하되 주기적 재평가 대상과 영구보존의 단계로 두는 것도 생각

주기적 재평가 기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나 최소 대통령 임기보다는 길어야 할 것임

10년과 영구 사이에 한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년이상 보존해야 하나 영구까지 보존할 필요는 없는 기록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단계만 있는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영구기록물이 많이 양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10년, 20년, 영구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도 및 시스템 변경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할까 같음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을 영구로 한정 하는 건 동의함. 하지만 전자기록물 보존기간 축소는 좀더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전자기록물도 평가절차가 잡힌다면 폐기가 적정하게 매년 이뤄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연관시켜보았을 때 아무리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라도 무기한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또한 타 법률에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도 국가기록원에서 전면 조사해 것으로 보임.
현재 30,준영구,영구 기록을 모두 영구로 취급하여 기록원으로 이관할 경우 기록원 보존공간 및 업무 과부하 우려
기록관에서는 30년 이상 기록을 기록관으로 이관시키고, 이후 영구/준영구/30년은 기록원에서 판단하여 보관
10년과 30년 사이 간극이 크므로 기록관에서 처리 가능한 한시보존기간 20년 추가
인간의 생애 등과 관련하여 30년 전후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영구기록물이라고 해도 보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함.
각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이 정말 어려움. 연구사가 실제로 다른 업무를 경험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단기/영구보단 '10년'으로 기준하여 평가하고 동종대량은 별도의 보존기간을 영구기관과 협의하여 평가없이 폐기 추진.

### 8-6.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비밀기록 관리방안 재검토」를 국가기록원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p>○ 효과 : 현재 일부 특수기록관 및 군기관을 빼고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비밀기록은 충무계획 혹은 을지훈련 관련이 대다수이며, 이는 대부분 단기보존 대상이나 공공기록관리법의 비밀기록 이관조항으로 인하여 일반문서 재분류되지 않고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에 어려움 발생. 또한 생산현황통보에서 비밀기록 현황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정원에서 매년 2차례 비밀기록현황 조사 데이터가 명확함.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비밀기록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 방안 : 국방/외교/통일/군 등과 관련한 일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비밀기록은 영구기록으로 간주하여 현행과 같이 관리(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일반문서든 비밀문서든 상관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며, 그 외의 기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은 처리과에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만료까지 보관하다가 기록물 평가심의회 때 반영하여 폐기 처리(기록관 이관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크기 때문에 생산부서 보관 후 보존기간 만료 시 처리 유도. 처리과에 비밀기록 보존공간 및 시설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존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음).</p>
--

비밀기록의 일반문서 재분류 후 이관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시행령68조) 2. 비밀기록이 평가심의회에서 보존기간 상향으로 재책정되면 처리과로 보내는 것인지? 궁금 3. 처리과에서 관리하다 30년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주체는 처리과인지 기록관인지? 레코드센터가 생길 경우 비밀기록은 레코드센터를 안 거치고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지 여부
법령상 모순되는 부분은 이미 공공기록물법 개정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제시한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비밀/일반에 대한 결정이 필요.
비밀기록 현황조사는 보안업무에서 수행하는 비밀보유현황이 더 정확하므로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맞으며, 비밀기록 이관조항 문제는 법령개정으로 반드시 재분류 후 이관토록 하고 기록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비밀기록관리를 처리과에 일임할 경우 보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니 일단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만 기록관에서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관시점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이관할 수 있음,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이후에 이관을 하는 것이 편의상 합리적이거나, 그것을 제도에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을듯함
2017.2.22.이후 대외비 사본 파기 근거가 없어져 모든 대외비(원본/사본)를 기록관으로 이관해야할 처지임. 대외비에 대한 사본 파기 근거 복구 필요
그러나 지엽적이다!

**8-7. 기록관리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p><b>예시)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 기록관리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 : 현재 기록관리 지도점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기록물의 미등록, 유실, 무단폐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이와 관련하여 전문요원이 부서 기록관리 현황 감사를 담당할 수 있다면 생산단계의 기록관리를 좀더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li> <li>- 방안 : 현행 공공기록관리법에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타법 혹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고려). 전문요원이 감사실 소속이 되어 기록관리 감사를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이는 현행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 설치 및 전문요원 배치/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협조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li> </ul>
---

<p>본부-특행기록관의 이원적 구조는 같은 일을 동시에 여러 명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본부에서 광역적으로 지역을 나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함.</p>
<p>기관 내 기록물관리 부서를 폐지. 기관별 기록관이 아닌 통합 기록관으로 운영. 처리과 대 통합기록관 방식 운영을 제안합니다.</p>
<p>기록연구직의 인식과 위상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고하였으면 합니다. 단지 공문에서 ‘기록연구사’라는 이름이 제대로 쓰이는 것만으로도 업무협조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유치해보이지만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록연구직의 유니폼을 정한다든지, 사명문을 기록관에 걸 수 있도록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사례가 매우 좋지 않으나 나치 독일에 자원율이 높았던건 멋진 군복 디자인 때문이었고, 나폴레옹은 ‘군인은 저 조그마한 천쫂가리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되어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보다 기록인으로써의 소속감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에는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p>
<p>2차 소속기관이 많거나 기록연구사 1인당 관리해야 할 기록물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이 존재하므로 이런 기관에 대한 기록연구사의 추가 배치가 매우 시급함. (ex)경찰서(전국), 각 지자체 등)</p>
<p>현재 기록연구사의 업무분장을 기관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감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p>
<p>단기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인포상시 일선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승급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특별승급은 호봉을 상승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소득상승의 효과도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기진작에도 효과가 있다고 봄.</p>

<p>또한 처리과 기록물 정리시 이를 단순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결국 일선기관에서 기록물관리는 사무로 불리는 담당자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의 복잡한 정리체계는 사무들의 업무가중 및 기록물 업무 포기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기록물 정리 장기보존 기록물로 한정하고 단기업무 기록물은 현재의 정리방법을 간략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함.</p> <p>향후 기록물관리 법령 개정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흡수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가령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등.</p>
<p>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이 국가기록원만의 혁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p> <p>국가의 기록관리 전체 시스템, 제도, 조직, 기록관리 관련 정책의 결정방식 및 집행 방식,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임</p>
<p>매년 실시하는 국가기록원의 기관평가는 기관 내에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적음. 평가를 잘 받아도 못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그에 비해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행정관리역량 평가 항목 등) 평가에는 기관 자체에서 직원을 독려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노력함. 강제성의 문제인지, 평가 이후의 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차이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의 국가기록원의 기관평가는 행정적 낭비만이 클 뿐, 실효성은 적다고 생각함.</p>
<p>기록관리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은 1인 기록관체제를 개선하는 데 있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과장급 기록관리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수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다양한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기록관리 업무범위의 확대를 전제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울 듯 보임. 따라서, 앞에서 말한 기록연구직의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아카이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권역별 광역레코드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됨</p>
<p>일차적으로 기록관리 1인 체제를 타파해야 함. 팀, 계로 운영되어 서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 소속감을 가지며, 팀워크로 일을 해야 함. 혼자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 또한 이 팀, 계를 잡부서가 아닌 정확히 권한을 가진 곳에 배치하여야 함. 감사실 아이디어도 괜찮아 보임.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크기에 따라 기록관 인력을 따져야 하며, 1인체제는 정말 없어야함</p>
<p>남경호쌤 고생이 많으십니다.</p> <p>시간 부족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p>
<p>동일한 일을 10년이상 하고 있는 기록연구사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절실함</p> <p>직원들이 관심없는, 그래서 일만 시킨다는 이미지가 조직 내에 있고, 소수직렬이라 배려를 받기보다는 일당백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팽배함.</p>
<p>생산현황통보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p>
<p>현재 기록관리 업무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고나 지역 문제로 임용 후에도 공석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p>
<p>중앙행정기관(본부), 교육청(본부), 시도(본부)에 조직 및 인력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어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본청에서 전문요원이 함께 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현재처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내실있는 기록관리를 위한 효율적 제도 개선 필요</p>
<p>다소 혁신적인 내용이지만 더불어 행안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보목록 100%공개로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함. 이럴 경우 미등록에 대한 주요기록물 등록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및 메모보고 지양 등 개선되는 부분 등이 꽤 있을 듯함. 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생각함.</p> <p>타 법률에 해당업무의 기록관리 상황이 나와 있는 걸 전담하는 부서가 국가기록원내에 존재할 필요가 있음.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음.</p> <p>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기록관리시스템 이관도 되지 않는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시스템 내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이 절차를 정확히 명시해 주었음 함.</p>
<p><b>○ 각 부처별 기록관리 관련사업 예산 분배</b></p> <p>- 국가기록원 이관시 정리에 대한 비용 때문에 이관대상을 축소시키거나 연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국가기록원에서 일괄로 진행하는 기록물 정리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각 부처로 배분하여</p>

<p>각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함.</p> <p>법령개정, 표준 및 RMS 업데이트등 연구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업무상 지식의 변화가 있다면, 이른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연구사들간의 그릇된 정보나 지식들이 난무하고, 전문적인 정보적 접근이 쉽지않고, 단순 메뉴얼 만으로 이해가 난해함, 연구사들간의 지식적 갭이 큼</p> <p>전자환경으로 점차 빠르게 변화하면서 각 기관내 기록관리를 위한 업무를 위한 적합한 직렬이 꼭 기록연구사로 한정 지을 수 있을까 검토 필요하며 기관의 행정조직체계와 전자환경에서 기록관리 역할에 대한 재역할을 구성해야 함. 인사담당자가 입장에선 법상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 평가에 한해서 채용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정된 업무로 임시직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함. 채용시와 달리 현실적으로 임시직이든 정규직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경우 기록관리 및 추가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가 없어진다해도 기록관리업무를 안한다고 해서 감사 및 패널티등 내부적 통제 방안은현재는 없음(외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일부 국민 권익 재산권과 관련된 부처에만 많을뿐 대다수는 외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전자적환경에서 기록관리의 확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 기록까지의 접근범위를 넓혀가야하나 현실은 결재문서로 한정되어 인식되는 결과 점차 기록관리업무가 필요없다고 생각함(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운영지원과 향후 과제 토론시에도 제일 먼저 없어야할 직은 행정자료실 관리하는 인원으로 인사담당이 언급)</p> <p>○ 인력충원이 가장 필요함.</p> <p>충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부처별로 연구사를 운영하여 소속기관에 필요한 기록관리 업무가 있다면 본부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기록관리 인원 운영하는 방안 제안</p> <p>○ RMS 서버 안정화</p> <p>기록관리시스템이 있지만 불안정하여 활용에 어려워 효율적 업무 추진 어려움.</p> <p>감사원에 기록관리 전담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안문을 작성할 때, '별도송부'로 보내는 문서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합문서를 정리할 때 그 부분만 체크해서 직원들에게 정리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공무원 직렬 중 1인이 소속기관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직렬은 찾아 볼 수 없다.</p> <p>인사혁신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록연구사의 인사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p> <p>기록생산 혹은 사전단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수단 확보 필요.</p> <p>전자기록,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려하면 사후적 조치방식은 불가능함.</p> <p>10년 후 기록관은 뭘 관리할지 의문.</p> <p>기록관장은 과장에 그칠게 아니라 기관장으로 설정해야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도 및 업무추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p> <p>생산시스템-RMS-AMS 체계 전반적 재검토.</p> <p>기관 기록연구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음. 기관으로 권한 양도가 필요함. (기관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양도 방향.)</p>
--